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59-2단독

결 정

사 건 2019카단823271 채권가압류

채 권 자 1. 김정민
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66길 23, 101호 (남현동)
2. 송형민
전주시 완산구 문학대6길 18-6, 101호 (효자동3가, 하나빌라)
3. 김현진
부산 사하구 괴정로 198-1, 402호(괴정동, 괴정부자마을)
4. 조범철
부산 사하구 당리길 27 (당리동)

채권자 1,2,3,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지향 담당변호사 김진

채 무 자 주식회사 레이스투어 (110111-4959908)
서울 종로구 종로 19, 에이동 1403호 (종로1가, 르메이에르종로타운1)
대표자 사내이사 이주헌

제3채무자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(110111-0609771)
서울 중구 을지로 16 (을지로1가)
대표이사 우종웅

주 문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.

갑 제1[±]1호증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
청구채권의 내용 2017. 1. 부터 2019. 7. 까지 미지급 가이드보수 채권

청구금액 금 162,082,621 원

(김정민 62,504,127원, 송형민 59,491,000원, 김현진 24,217,092원, 조범철 15,870,402원)

이 유

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-000-202000207500호,김정민의 3)을 제출받고,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-000-202000207591호,송형민의 3)을 제출받고,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-000-202000207725호,김현진의 3)을 제출받고, 공탁보증보험증권(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-000-202000199153호, 조범철의 3)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0. 1. 16.

판 사 최희준



- ※ 1.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.
- 2.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갑 제1²1호증

목록

2019카단823271

1.

청구금액 : 162,082,621원

채무자 주식회사 레이스투어(110111 - 4959908)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(110111-0609771)에 대하여 가지는 여행하청 정산대금 채권(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여행 하청을 받아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여행하청 정산대금)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가압류한다.

- ① 지급기일이 가까운 것의 순서로,
- ② 지급기일이 같다면 (가)압류가 있는 것을 후순위로 하여 현재의 잔액과 향후 지급될 여행하청 정산대금으로서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- 끝 -